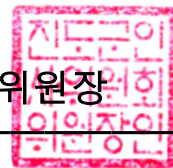


2024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4년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직급 및 직렬 (직류)	서류전형 합격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비고
녹지 9급 (산림자원)	20명	A101, A102, A103, A104, A105, A106, A107, A108, A109, A110, A111, A112, A113, A114, A115, A116, A117, A118, A119, A120	
시설 9급 (일반토목)	17명	B101, B102, B103, B104, B105, B106, B107, B108, B109, B110, B111, B112, B113, B114, B115, B116, B117	
시설 9급 (건축)	10명	C101, C102, C103, C104, C105, C106, C107, C108, C109, C110	

2 필기시험일시 : 2024. 9. 28.(토) 10:00 ~ 11:00 (60분)

- 시험당일 09:30(09:30 건물 출입문 통제)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 필기시험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3 시험장소 : 진도실업고등학교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10

※ 「학교 내 주차 불가」 및 시험장 입구 교통이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시험장 인근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응시대상 및 경쟁률

(단위 : 명)

직급	직렬	직 류	선발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응시대상
9급	녹지	산림자원	2	20	10:1	A101 ~ A120
	시설	일반토목	10	17	1.7:1	B101 ~ B117
		건축	4	10	2.5:1	C101 ~ C110

5 시험장 배정(진도실업고등학교 :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10)

(단위 : 명)

직급	직렬	직 류	시험장	응시번호	배정인원	비고
합 계					47	
9급	녹지	산림자원	제1고사장	A101 ~ A120	20	
	시설	일반토목	제2고사장	B101 ~ B117	17	
		건축	제3고사장	C101 ~C110	10	

6

응시자 유의사항

- 1) 수험생은 공고한 필기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기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지정한 시험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에서는 절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타 시험실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3) 응시표는 원서접수시 기 배부하였으니,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를 지참**하시어 시험장(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 시험 응시 불가**

※ 학생증, 자격수첩, 모바일신분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책임입니다.

- 5) 수험생은 시험당일 **09:30(09:30 건물출입문 통제)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입실 할 수 없습니다.

(시험당일 08:30부터 시험실 입실가능)

- 시험시간 관리는 수험생 책임이며,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독관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워치,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휴대 불가)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어 있더라도 시험기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등)

6) 답안지의 모든 기재(표시)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연필, 일반필기구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8)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11)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12)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합니다.

13)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고 회수하므로 절대로 가져갈 수 없으며, 문제책 반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14)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답안지에는 개명 전 성명 및 변경 전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5)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재(또는 표기)하지 않으면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본 공고문과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7)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코로나 확진 또는 발열(37.5도 이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2024. 9. 26.(목) 18:00까지 총무과 행정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안내 사항

- 1)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4. 10. 2.(수) 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2)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본인에 한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총무과 행정팀 (☎ 061-540-3222)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 진도군 총무과 행정팀(☎ 061-540-3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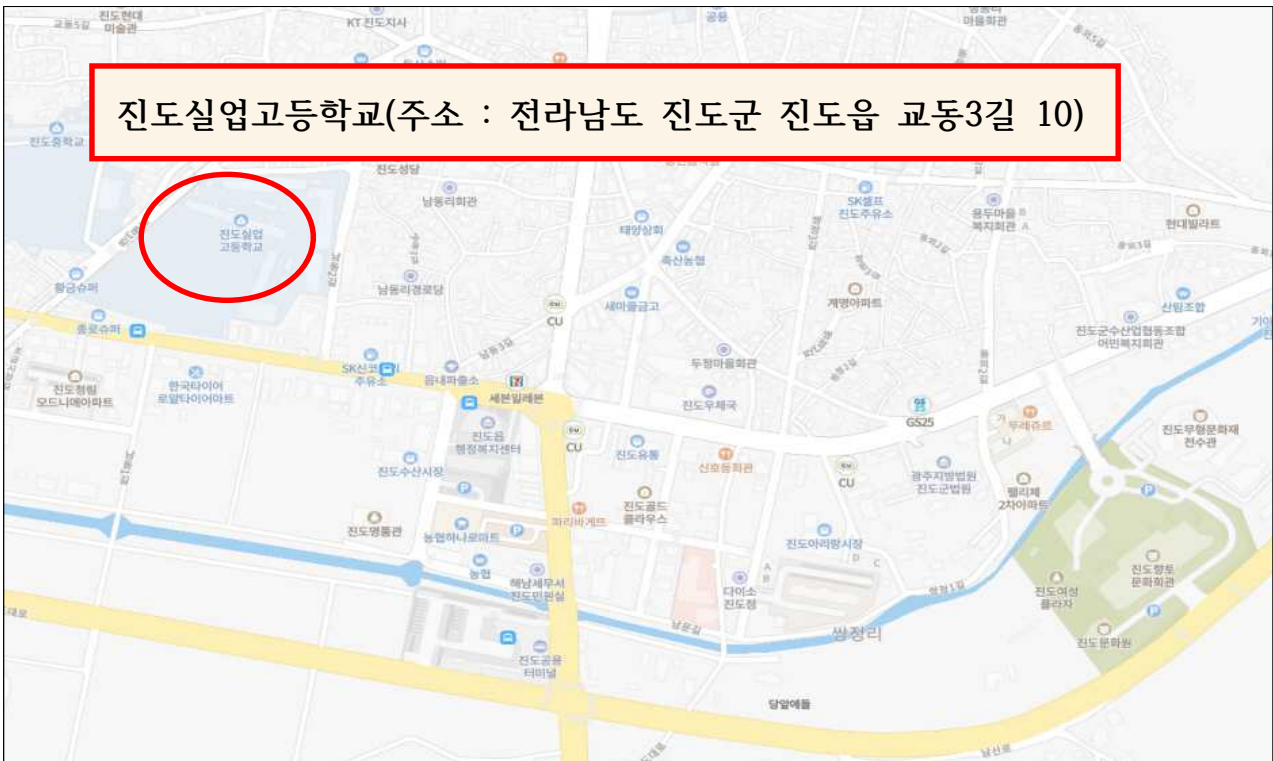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8

악도



※ 시험 당일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주의바랍니다.

※ 학교 내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 입구 교통이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시험장 인근에 하차 및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